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1. . .<br>(제 회) |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행정안전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00.00.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3.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의5,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6, 제30조, 제33조의2, 제38조의10, 제64조, 제78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 부여

나. 시·도지사의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부여(안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5, 제32조, 제35조, 제42조의2, 제66조의2, 제75조)

-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등록 등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용권한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의2, 제21조의3, 제22조, 제32조, 제42조의2)

- 5급 이상 경채 등의 시험요구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경유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을 거  
치도록 함

라.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본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요건 중 “지방의회 추천 위원” 삭제

마. 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27조의5)

- 그간 계획인사교류 대상을 4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  
던 것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급 구분없이 일반직공무원 전체  
로 대상을 확대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같다]”를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 “제110조제6항”을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를 “여성위원은 2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0조의2 중 “한다)”를 “한다),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구청장으로부터”를 “구청장으로부터,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군·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도 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

도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시·도 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으로, “시·도”를 “각각 해당 시·도의”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1조의7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시·군·자치구의”를 “시·군·자치구와 시·군·구의회의”로, “시·도”를 “각각 해당 시·도의”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장”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도 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및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27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시·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도지사

가”를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도지사를”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이면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33조의2제7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을 “시·도 단위별, 시·군·구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을”로,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를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로,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를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를 “각각 해당 시·도의”로 한다.

제38조의10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거쳐”를 “거쳐 요구하며,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를 각각 “각각 해당 시·도의”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시·도인사위원회”를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  
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도인사위원회의”를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  
회의”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  
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  
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u>같다</u> ]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br>-----<br>-----<br>-----<br>--- <u>같다</u> ]과 <u>지방의회의 의장</u> [ <u>시 · 도 의회의 의장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 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 -----<br>-----<br>-----<br>-----<br>-----.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생    략)                                                                                                                                                                       |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                                                                                                                                                                      | ② -----<br>-----                                                                                                                                                                    |

의 업무 분야에는 범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  
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  
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_\_\_\_\_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한다.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

-----.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인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

-----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3. (생략)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23조제6항 -----  
-----  
-----  
-----  
-----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  
-----  
----- 여성

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의2(통계보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통계보고) -----  
-----  
-----  
----- 한다), 시·도의회의 의장 -----  
-----  
-- 구청장으로부터, 시·도의회  
의 의장은 시·군·구의회의 의  
장으로부터 -----  
-----  
--.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  
-----  
----- 시·도지사,  
시·도 의회의 의장 -----  
-----.  
-----  
-----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  
장-----.

② 삭 제

③ (생 략)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  
-----  
-----  
-----.

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  
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한다.

6.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의2(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  
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  
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  
-----  
-----  
-----  
-----  
-----  
-----

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

-----  
-----  
-----  
----- 시·도지사, 시·도회의의 의장 -----  
-----  
-----  
-----.

1. -----  
-----(시·도지사, 시·도회의의 의장 -----  
-----  
-----  
-----

2. -----  
-----  
-----(시·도지사, 시·도회의의 의장 -----  
-----  
-----

② -----  
-----  
-----  
-----  
---. --- 시·도지사, 시·도회의의 의장 -----

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  
-----  
-----  
-----.

③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  
-----  
-----  
-----  
-----.

④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  
-----  
-----  
-----  
-----.

⑤ -----  
-----  
-----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  
-----  
-----.

⑥ -----

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⑩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⑪ (생략)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  
-----  
-----  
-----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 의장 -----.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 의장 -----  
-----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

-----

-----

-----

-----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 · 군

· 구의회 의장 -----

--- 각각 해당 시 · 도의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  
-----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 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  
-----  
-----  
-----  
---.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 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  
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2조(시보공무원)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  
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  
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  
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  
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  
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을 파견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 의장-----  
-----  
-----  
-----  
-----.

제22조(시보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시·군·자치구와  
시·군·구의회 -----  
--- 각각 해당 시·도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  
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  
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하  
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  
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  
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  
이 필요한 경우

2. (생략)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  
·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  
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  
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회의 의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 지방자치  
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하  
다)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2. (현행과 같음)

3. -----

----- 시  
·도지사, 시·도 의회의 의장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③ ~ ⑥ (생략)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1. ~ 3.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 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생략)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2. (생략)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

1. ~ 3. (현행과 같음)

⑥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 의장-----  
-----.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도 의회의 의장은

1. 일반직공무원-----  
-----

## 2.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  
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  
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의장은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 의장-----

-----.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  
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방의회의 의장-----

-----.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⑤ · ⑥ (생략)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구하면 4  
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  
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  
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  
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④ -----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

----- 도시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이 -----

-----

-----

-----

-----

----- . -----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시  
-----  
-----  
-----  
-----  
-----  
----- 시  
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또  
는 시 · 군 · 구의회의 의장이면  
시 · 도지사 또는 시 · 도의회의  
의장을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⑥ (생략)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임용)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  
-----  
-----  
-----  
-----  
-- 시·도 단위별, 시·군·구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  
-----  
-----

----- 각각 해당 시  
· 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

각각 해당 시 · 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각각 해당 시·도의 -----  
-----  
-----  
-----

제38조의10(휴직 공무원 등의 준수 사항) ①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 ⑦ (생략)

제64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② -----  
-----  
-----  
-----  
----- 거쳐 요구  
하며,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  
-----.

③ -----  
-----  
----- 각각 해당 시·도의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4조(응시수수료) ① -----  
-----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생략)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

② (생략)

③ 소속 기관(시·도와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제75조(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고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  
-----  
-----.

제75조(재심) ① -----

중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

----- (각각 해당 시  
• 도의 인사위원회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  
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의 의장-----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                                                                                                          |
|--------------------------------------------------------------------------------------------------------------------------------------|----------------------------------------------------------------------------------------------------------|
| <p>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 <p>-----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p> <p>-----.</p> <p>-----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u>-----.</p> |
|--------------------------------------------------------------------------------------------------------------------------------------|----------------------------------------------------------------------------------------------------------|